
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·핵심 부리기술평가사업 공고 관련 주요 FAQ

2026. 4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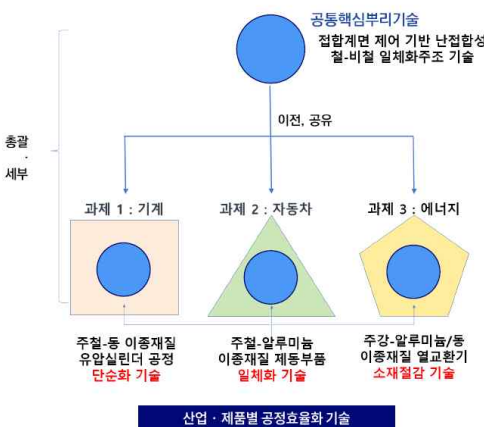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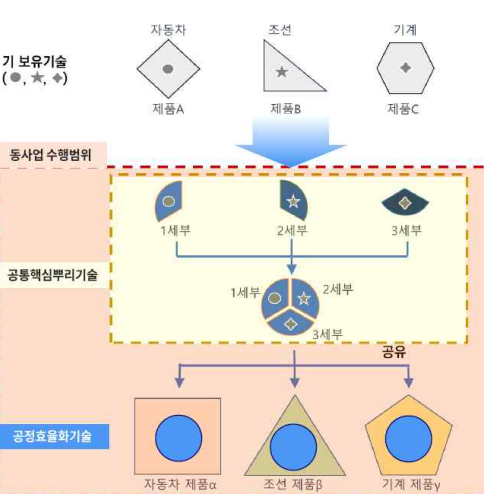




※ 본 안내는 일반적인 안내 및 예시이며, 공고문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안내와 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공고문이 우선됩니다.

(공통)

1. 공통핵심기술이란 어떤 것인가요?

답 변	<p>○ 공통핵심뿌리기술이란, "2개 이상의 수요산업에 활용 가능한 플랫폼성격의 핵심뿌리기술"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</p> <p>(사례) "이종소재 일체화 구조" 기술 - 자동차 산업의 디스크브레이크 - 중장비 산업의 유압실린더블록 - 기계산업의 산업용 열교환기</p> <p>위 사례와 같이 제품생산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.</p>
-----	---

2. 기술이전형 / 기술공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.

답 변	<p>○ (기술이전형) 예시</p>  <p>○ (기술공유형) 예시</p>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기술이전형 </p> <p>1st 총괄기관이 선제적으로 기 보유 노하우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공통·핵심 뿌리기술을 개발</p> <p>- 세부기관은 공통·핵심 뿌리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협업하여 개발 기술의 활용 시, 공정효율화 기술개발 단계의 기간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한 요구 스펙 제시, 피드백 등 협업 추진</p> <p>2nd 개발된 공통·핵심 뿌리기술을 활용하여, 세부기관이 각자 산업·제품별 공정 효율화 기술 (소재전환, 공정단축, 에너지·환경 기술) 개발을 추진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기술공유형 </p> <p>1st 해당 뿌리기술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참여기관들이 협력 R&D를 수행하여 하나의 공통·핵심 뿌리기술을 개발</p> <p>2nd 개발된 공통·핵심 뿌리기술을 활용하여, 참여기관이 각자 산업·제품별 공정효율화 기술 (소재전환, 공정단축, 에너지·환경 기술) 개발 추진</p>		

(IP 관련)

1. 신규과제 접수를 위해 접수 전 컨소시엄 내에서 별도의 특허 계약 체결이 필요한가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그렇지 않습니다.-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출원, 특허등록, 기술이전, 크로스라이센스 등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------------	--

2. 동 사업 공고에서 제안된 기술이전, 기술공유형의 특허 성과는 어떤 것들인가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술이전형, 기술공유형 마다 특정한 특허 성과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예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- 기술이전형 :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도로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이 진행되고, 각각의 세부주관별로 "통상실시권" 협약- 기술공유형 : 기본적으로 "공동특허 출원·등록"이지만 수행기간 간 협의를 통해 "크로스라이센스(계약)" 공유방식도 가능
------------	--

3. 동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특정기한 내 기술이전 또는 기술공유형태의 성과 창출이 있어야 하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술이전형, 기술공유형 모두, 특허관련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(과제별 RFP참조) 다만, 특별한 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동 사업의 취지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기한내의 성과창출을 부탁드립니다.
------------	--

4. 특허전략수립, 회피방안, 컨설팅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한가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.(단,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 미계상 가능)○ 기관유형과 관계없이 IP-R&D, 특허컨설팅 비용 등을 연구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.
------------	---

(접수 및 연구개발비 관련)

1. 신규과제 접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어디로 하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공고문의 10. 문의처를 참고하시어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온라인 시스템 접수 관련은 R&D 상담콜센터(1544-6633)- RFP의 기획의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분야 담당PD- 공고문, RFP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 등 문의사항은 해당분야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----	--

2.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시,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고 하는데, 사용방법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iris.go.kr 로 접속하시어 우측의 QUICK LINK > 자료실에서 접수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아울러, QUICK LINK 하단의 FAQ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○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업로드는 개인의 숙련도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매뉴얼을 참고하여 최소 3일 이상은 여유를 두시고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3. 기술료 징수 과제에 비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 하게 되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비영리기관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이므로, 기술료 징수 과제라 하더라도 기술료를 내지 않습니다.
-----	---

4. RFP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상한선이 있는데, 별도의 상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 하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1차년도는 상한선 이내에서 작성하시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매년 정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= (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-1차년도 상한선)/N-1(연차수-1)로 일정하게 산정하시기 바랍니다.* (예시) 1차년도 8.5억원 이내,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40억원 이내의 경우 1차년도 8.5억원 , 2~4차년도 10.5억원
-----	---

4. 연구개발비 산정 시 연구시설·장비비와 연구재료비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목과 내용을 기재하였으며,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. 	
	구분	세부항목 및 내용
	연구시설·장비비	1) 연구시설·장비 구입·설치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·장비의 구입·설치비,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
		2) 연구시설·장비 임차비: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·장비의 임차비
		3) 연구시설·장비 운영·유지비: 유지·보수비,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
연구재료비	1) 연구재료 구입비: 시약·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	
	2) 연구재료 제작비: 시험제품·시험설비 제작비용	
<p>※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 또는 외주용역, 2천만원의 이상의 연구재료비의 경우 반드시 해당 별첨 서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또한, 여러 개의 부품이 모여져 하나의 장비로 기능하는 경우 장비심의 대상의 될 수 있습니다. 		

5. 통합형 과제의 접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
답 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RIS에서 통합형 과제를 지원하실 때는 먼저 총괄과제 접수를 진행하시어, 총괄과제 번호를 생성해야 합니다. 각 세부과제는 총괄과제의 번호가 생성된 후 전산 입력이 가능합니다.
------------	--